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4조의 요약

- 회사의 지급가능 소득금액(기부금 지급능력)의 50% 범위에서 손금인정될 수 있는 법정 기부금(2006~2008년까지는 75% 손금인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가액,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 각 사업연도소득(전액 손금기부금항목을 빼기전 총액) ⊖ 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 해당 지급능력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1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 공익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 각종 공익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명목을 위한 기부금지출액 등(시행령·시행규칙 열거단체나 열거된 용도에의 지출액) → 지급능력기준액 × 10%만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지급능력기준 소득금액계산 = 당연도 소득(여력 × 50% 손금항목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계정금액을 반영하기 전 금액) ⊖ 50% 손금산입범위내 인정되는 기부금액 ⊖ 세법상 이월결손금 조 특법상의 기부금 등 ⊖ 이월익금
- 지정기부금 계정금액의 지급능력기준액 × 5% 초과액은 당연도 손금불산입되지만, 향후 5년간 각 연도마다 지정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산입됨.
- 지정기부금, 50% 손금해당 항목이 아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됨.
- 기부금 지출시 기부금영수증 보관해야 손금산입 가능함.

## ●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I.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 본 조의 개관

#### 1) 기부금의 손금산입 개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무상대가적 지출인데, 엄격히 말하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조는 기부금지출액 전액을 무한정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기부금 중에서 특정조건이나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본 법상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상 기부금이란 자유의사에 의하여 법인이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적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여의 가액인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고 있다. 기부금의 종류로는 기부금을 받은 상대방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연도 과세가능 소득범위내에서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이 있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익목적 기부금, 즉 지정기부금과 전액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 등이 있다.

본 조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으로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면 당해 사업연도의 국가기부금 등 공제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지급여력 금액의 범위(50%)내에서 대부분 손금산입되고,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일반법인이라면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 공제전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의 10% 해당 금액의 합계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된다. 그동안 시행되던 자기자본금액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에 의한 한도로만 축소조정하여 기부금지출의 경감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당연도 기부금 중 세무상 한도초과액은 5년(1년)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금지출 시점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현금주의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데,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이나 공익목적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면 이연비용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한도액을 계산한다.

## 2) 기부금 손금산입의 제한이유

기부금은 법인의 순자산증가 및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되는 것인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이는 수익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과세 후 소득인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차원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경우 법인이 임의대로 지출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의 공평배분을 해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자원의 공평배분, 법인간의 과세형평 및 법인업무상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라는 차원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 ①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기부금이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타인의 일을 보조할 목적으로 재물을 출연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상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기부금의 뜻을 준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의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법적 제한이나 규제의 차원이므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등의 여부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부금의 정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의 범위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데 법인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1) 무상지출 재산적 증여가액

### (1)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 ① 다른 사람에게 지출하는 가액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제3자인 타인이어야 하는데 법인과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이거나 불문하고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면 충분하고 여기에는 국가도 포함된다. 만약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무상제공한 경우라면 본 법 제52조의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물론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그 성질에 따라 사용인이면 인건비(급여·상여·퇴직급여로 구분됨)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주주이면 배당처분으로, 기타의 다른 관계는 증여로 보아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손금불산입된다. 이밖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초과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 되어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용인되지 않으며 배당·기타사외유출 및 증여 등으로 처분된다.

특수관계자는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는데 본 법 제52조에 자세히 해설 제기한다.

#### ②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도 한다.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도 기부금에 해당된다. 이는 기부금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받는 상대방이 타인이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예외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지출관계가 같은 동일 법인간 일지라도 기부금의 지출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영리라는 표방하에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함이다.

**(2)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① 무상지출의 정의**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특별한 등가적 반대급부없이 금전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적극적 지출을 뜻한다. 여기서 법인의 현금 등 이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주는 경우도 기부금과 같은 뜻이 된다.

증여란 대가적 관계가 없는 무상의 뜻인데 무상이란 반대급부로서 돌아오는 대가적 가치액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법상 기부는 민법상 증여와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무상이 아닌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가와와 간접적 교환조건이 있는 지출이라면 기부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입추천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등은 기부금이 아니며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손비에 해당한다.

**② 재산적 가치액의 증여와 기부금**

기부금이 되려면 재산적 가치액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출이 없다면 반대급부가 없어도 기부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액이란 적어도 금액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유형재화가 가시적이며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무형적 가치나 용역의 경우도 포함된다.

**(3)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가액****① 사업무관 지출의 개념**

법인기업에서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분류된다. 그렇지 않고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액은 기부금이 된다.

**② 기부금 · 접대비 · 일반대가의 비교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차이요점은 타인에게 재산적가치가 있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지출한다는 개념에서는 접대비와 같으나 그 지출목적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이는 접대비와 달리 기부금으로 한다.

이들간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명한다.

	재산적가치	유상·무상대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상대방	소득처분
기부금	있음	무상	관련 없음	타인	기타사의유출
접대비	있음	무상	관련 있음(간접)	타인	기타사의유출
수수료등	있음	유상	전적인 관련(직접)	타인	기타

## 2)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 ① 저가양도·고가매입의 개념과 범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저가·고가 양수도 차액이 기부금이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자(시행령 제87조)와의 거래는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한다.

### ② 실질적 증여여부와 증여사례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이유와 대응되는 금액에 대하여 예상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이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 ◎ 아무리 경쟁적 시장이 형성된다 하여도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시장가격 형성에도 예외 요인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같은 가격의 재화·용역이어도 현실적으로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 ◎ 화재로 시장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자금



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 부지의 잔대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 그 신축할 건물의 건설업자에게 동 대지 일부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시가와는 관계없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고 동 취득주식을 3개월 후 당초 취득가액으로 타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당시의 정상시가대로 당해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받거나 또는 기부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 ◎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법인이 경영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거래로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 ③ 정상가액의 범위 및 계산

결국 법인의 자산거래시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의 판정은 당해 거래가격이 정상가액이었던지의 여부에 의하는데, 특정자산의 정상가액 파악이 기부금의 여부 및 금액결정에 필수적이다. 정상가격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 이익률 30%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상가격초과나 미달로 인한 기부금 간주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의 30%를 가감(⊕ 혹은 ⊖)한 여유범위금액을 정상가액 상하한으로 한 후 초과차액부분만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000,000원이고 양도금액이 12,000,000원이라면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8,000,000원이 아니고 세법상 시가에서 30%를 차감한 금액인 정상가격 최소한인 14,000,000원과 12,000,000원의 차액인 2,000,000원이다. 그러나 시가가 20,000,000원이고 양도금액이 16,000,000원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30%를 차감한 가액이 정상가격이기 때문에 정상가격 최소한은 14,000,000원이며 정상가액 이상이므로 문제 없다. 즉, 양도금액이 정상가격 하한선인 14,000,000원보다 높은 16,000,000원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없다는 뜻이다.

④ 정상가액결정을 위한 세법상의 시가

시가는 실제거래가격인데 바로 그 자산이 경쟁적으로 거래되기 전에는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제기된 자산인 경우는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사실자체로 시가가 없다는 뜻이 된다. 경제적 개념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을 순차로 적용하면 무난하다.

### 3. 기부금 가액결정방법

기부금은 현금 또는 어음 등 현금등가물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상품 또는 제품 등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부금의 가액을 취득원가, 장부가액 또는 시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교시가, 감정가, 상속세법상 평가액 등 시가계산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과 법정기부금(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무조건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세무상 손금산입금액을 계산한다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기부금한도 계산에서는 시가 보다는 장부가액이 낮아서 장부가가 유리하다.

####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1. 3. 31 개정)

## II.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법 제24조제1항)

### 1. 공익성격의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계산

#### 1) 지정기부금의 범위

##### (1) 시행령상에 열거된 지정기부금

##### ① 공공목적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부담가능 소득금액×10%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하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외의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종교·자선·문화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래 이런 사업은 국가가 중앙정부재원으로 하여 일반국민의 사회복지와 발전을 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민간기업의 일부기부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즉, 민간법인이 정부업무를 대신하여 보조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열거유형

시행령 제36조는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것만 이에 해당된다.

열거공익법인 및 학교 등 특정조직에 대한 기부금만을 지정기부금이라 하는데 열거한 공익단체에 대하여 당해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재원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이란 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1. 3.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신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개정)

-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2010. 2. 18 개정)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 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0. 8. 25 개정)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たく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1. 12. 31 신설)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8. 2. 29 개정)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의 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기금의 가액 (2010. 12. 30 개정)
-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만, 1)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1)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2011. 3. 31 개정)
-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③ 제1항제1호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감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1. 3. 31 개정)
-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 3. 31 개정)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1. 3. 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신설)
-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 ⑪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지정기부금 받는 공익관련 단체의 기부금 운용 지출요건

- ◎ 비영리법인·단체 등(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기부금(사회복지법인·학교(원격대학 포함) 등,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기타 공익목적 열거 단체)
- ◎ 특정단체(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관련자 :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공익신탁기부금, 사회복지·예술·종교 등 공익목적 기부금 등
- ◎ 각 사업자가 조직한 동업자, 주무관청 등록단체(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 특별회비(경상경비외의 비용, 경상경비 부족분의 추가 징수액은 특별회비아님, 대부분 시설신축 및 특정목적 추가금액이 특별회비임)
- ◎ 사회복지시설(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열거된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 ◎ 법인으로 보는 각종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시행령 제36조제2항)
- ◎ 고유목적사업비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유설립목적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일반사업임. 의료업은 제외)이 아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함(시행령 제36조제3항).

- ◎ 기부금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함(시행령 제36조제4항).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요건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함(시행령 제36조제5항·제8항).

－ 목적외 사업영위 및 요건위반시 지정기간 종료후 재지정 안 될 수 있음.

#### ④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목)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업비·시설비·운영비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범위내이어야 지정기부금이 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10. 17 개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 3. 22 개정)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개정)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004. 1. 29 신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 3. 24 신설)  
 더. 「의료급여법」 (2007. 12. 14 신설)  
 러. 「기초노령연금법」 (2009. 6. 9 신설)  
 머. 「긴급복지지원법」 (2009. 6. 9 신설)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2009. 6. 9 신설)  
 서. 「장애인연금법」 (2010. 4. 12 신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1. 4 신설)
-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자를 말한다. (2007. 12. 14 신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3의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7. 12. 14 신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⑤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영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각종 학교(유치원·초·중·고·대학)와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에 주어지는 기부금을 말하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고 시설비·연구비·교육비·장학금 등만 해당된다. 즉, 학교 등의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재원보다는 학생·연구원의 연구개발 등에 직결되는 기부금만 해당된다.

### ⑥ 교육비·교육시설의 범위·사례

여기서 교육비는 학생의 교육이나 학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연구비는 연구원이나 학생들의 교육 연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한 시설비는 학교연구원부지·교사건물·실습지와 그 부대시설물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시설물의 범위는 각 학교의 설치기준령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

- ◎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의 건물을 도급받아 완공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 ◎ 학교법인의 운영비(직원급료·지급이자·차량유지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 :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지만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전액 지출한다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교육목적사업 활용이므로).

⑦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기부금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추천권자는 소속학교장이 되고 추천의 대상은 그 소속하에 있는 개인만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장은 추천권자가 될 수 없고 추천의 대상도 법인은 될 수 없다. 여기서 개인이란 학생들이라 할 수 있으나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비나 연구비 또는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지정기부금이 된다.

⑧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기부받는 자는 정부로부터 교육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부를 받은 자가 위와 같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아니면 지정기부금이 되지 아니한다.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초학문분야·응용과학연구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연구조성비·연구보조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⑨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에 대한 기부금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중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사업비나 활동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에 대한 기부금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⑩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종교방송법인에의 지출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고 그 지출명목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이어야 지정기부금이 된다.

이밖에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게 방송을 위한 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이 된다. 여기서 방송을 위한 건물이란 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해당하므로 방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물 부분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이 될 수 없다.

#### ⑪ 공익신탁기부금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익신탁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자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어야 한다.

#### ⑫ 각종 단체 공과금·회비·특별회비 등의 손금산입방법 비교

지출항목·과목	지출의 성격·유형·내역	손금산입방법	관련규정
조합·협회 회비	영업자조직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등록 조합·협회 등에 대한 회비지출액	일반손금임(전액 손금 인정). 손금열거항목	본 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11호

조합·협회 특별회비	영업자조직단체로서 법인 및 주무관청등록 조합·협회 등에 대한 특별회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 여 한도범위내 손금, 한도초과는 손금불산입	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제 1항제3호
조합·협회 회비	설립된 법인·조합·협회 아 닌 임의조직조합협회(비법 인·주무관청미등록·비등록 단체 등을 말함)	일반회비 : 지정기부금으 로 보아 손금한도계산 특별회비 : 규정없으므 로 손금불산입으로 봄.	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제 1항제3호
제세공과금	일반적인 공과금(불산입 열 거된 것 제외)	전액 손금산입(포괄적으 로 손금산입한다는 뜻)	시행령 제19조제 10호
의무공과금	법령규정으로 의무적 납부 액	손금산입됨.	시행령 제23조제 1호 반대개념(부 정의 부정)
임의공과금	법령상 의무납부금 아닌 것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23조제 1호 규정
위반제재금	법령의무불이행·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금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23조제 2호

## (2) 공익성 기부금단체 (시행규칙상에 열거된 지정기부금)

### ①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법인의 지출액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범위내 손금산입될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와 시행규칙 제18조에 열거되어 있다. 주로 국민 전체에 관련된 공익단체이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2011. 2. 28 개정)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2. 28 개정)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 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11. 2. 28 개정)

⑦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1. 2. 28 개정)

[별표 12] (2011. 2. 28 신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제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법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3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중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8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7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7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7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별표 13] (2011. 2. 28 신설)

##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 부 금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새마을 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지출목적만 충족되면 되며, 상대방 조직이나 단체는 누가 되든지 관계없다.

공익성 기부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법인이 기부금을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위하여 지출하고 주체자가 지체없이 동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 불우이웃돕기 또는 지역새마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 영세민생활보호대상 자녀 중 중학생·불우방위병의 통학·통근을 위하여 군청·군부대 요청에 의해 무입통학증·승차권 발급분 해당 수입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 자매결연을 맺은 벽지학교의 학생초청경비는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한국맹인 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동 지팡이 매입에 소모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2)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 및 산식

(법 제24조제1항)

### ① 일반적인 계산산식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일반산식은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일반계산산식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인의 지정기부금손금산입 한도액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계산된 손금산입 범위액내의 지정기부금액만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㉞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범위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제2항의 소득액 × 50% 내에서 손금기부금총액 + 손익계산서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금액) - (소득액 × 50% 내에서 손금산입될 기부금 중 손금산입 반영된 금액 + 세무상 결손금)) × 10%
- ㉟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재무제표상 지정기부금 - ㉞) + 비지정기부금(열거 지정기부금 아닌 열거외 기부금)

### 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앞의 계산공식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지정기부금자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 등 모두를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을 계산기준소득금액이라 하는데 이는 법인이 법인 주변의 비영리조직에게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을 기증할 수 있는 지급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결손상태거나 회계결산 적자를 보면서까지 기부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산기준소득금액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계산기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지정기부금 계정금액 +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 계정금액

위 계산기준소득금액 공식에서 주의할 것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비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한 기부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차감한다.

③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계산을 위한 기준소득금액 : 회사지급능력 × 50% 등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계산에 대하여 지급능력관련 소득금액을 계산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소득금액에서 계산목적이 되는 대상금액인 지정기부금해당액, 국가 등 법정기부금 등을 모두 비용·손금으로 계산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즉, 기부금부담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을 갖고서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음 순차에 의해 계산하여 손금산입한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기부금과 조특법상 열거된 특례기부금 :

=일반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익금사항·손금사항 : 해당 법정기부금 등을 손금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항의 결손금 합계액)]×50%

②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이월익금은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이미 반영되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삭 제 (2010. 12. 30)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9. 2. 4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 12.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④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후의 금액

지정기부금 이외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의 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조특법상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이 있는데 지정기부금한도액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은 이러한 준비금을 세무조정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이월결손금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세무상의 금액인데 본 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말한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계산시 이러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이월결손금은 공제된다. 그러면 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도록 할까? 이는 결손금이 누적된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외적 지급능력이 약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지급능력이 없으면서도 손금산입된다는 이유로 다액의 기부금 지출을 한다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억제하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상의 목적하에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10년내의 것)을 차감한 후 산정하도록 축소한 것이다.

⑥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서 제2항의 세무조정결과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뺀 후 금액

본 조 제2항이 규정한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도 일정한도내에서만 반영되는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그것도 회사지급능력의 50%내에서 손금산입되는데 계산상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다시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법정기부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일반 부인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에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3) 지정기부금 당연도 안도초과액 5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 이월손금산입 (법 제24조제3항)

##### 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축소와 5년(1년) 이월공제

사업자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준조세적 성격의 지정기부금 지출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금액기준(50억 한도)×2% 필요경비 산입제도를 98년부터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에 의한 한도는 소득금액×5%에서 10%로 2011년 지출분부터 확대조정하였다. 그러나 일시에 몰리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이 합리적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도록 하기 위해 당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금지출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5년 이월공제이유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 현금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즉,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해도 그 해의 기부금으로 보지만, 미지급비용으로 발생금액을 계상해도 그 해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현금지출기준으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하므로 기업과 상대방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특정연도에 일시에 지출되고 다른 연도에는 현금지출이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만 한도를 계산하면 지정기부금 현금지출이 몰린 사업연도에는 손금부인되고 다른 연도에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어 기업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따라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으로 분식결산을 하려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 행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특정연도의 기부금이 많거나 이익이 적어 계산한도초과액에 대해 5년간(법정기부금은 1년간) 이월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③ 차연도 한도부족액 범위내에서 이월금액의 공제가능

당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차연도 손금산입계산에 있어서 그 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만, 그 미달하는 금액 범위내에서만 손금 산입하며, 나머지 차액은 차차연도로 계속 이월된다.

④ 당연도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계산사례

연도	지정기부금 지출액	한도액	한도초과	이월공제
00	150,000,000	100,000,000	⊕50,000,000	
01	100,000,000	120,000,000	⊖20,000,000	20,000,000
02	160,000,000	140,000,000	⊕20,000,000	×
03	140,000,000	150,000,000	⊖10,000,000	10,000,000
04	150,000,000	155,000,000	⊖ 5,000,000	5,000,000
05	100,000,000	105,000,000	⊖ 5,000,000	20,000,000
06	120,000,000	140,000,000	⊖20,000,000	20,000,000

상기에서 00연도의 한도초과액 5천만원은 01연도에 2천만원 손금산입되고, 02연도에는 한도초과이므로 공제안되고 03연도에 1천만원 손금산입된다. 또한 04년도 및 05년도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1천만원(=5천-2천-1천-5백-5백)은 5년이 넘었으므로 더 이상 공제되지 않고 소멸된다.

06연도에는 02연도의 한도초과액 2천만원 중 2천만원이 손금산입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④ 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2. 비지정기부금의 전액 손금불산입

### ① 비지정기부금의 개념과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은 앞에서 설명한 지정기부금과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을 말하는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타인을 보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증여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본질상 잉여금처분의 성격으로서 손금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손금을 용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연히 법인세 신고서상의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 ② 비지정기부금의 사례

- ◎ 특별히 공익단체 기부금 요건으로 열거 안된 경우의 사업관련없는 지출액
-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요건을 위배한 기부금
-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이 아닌 금액
- ◎ 사립학교법에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의학적 학생 임상교육·수련의의 임상연구 및 의학학술연구 등을 위해 지정하는 비용
- ◎ 일간신문사가 어린이날 행사시 창조물품 기증
- ◎ 독립유공자회관건립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 ◎ 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대구광역시 지부에 포교 및 교화사업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
- ◎ 수의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3.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 (법 제24조제2항)

#### 1)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① 이월결손금 차감후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인정

기부금의 기본개념은 법인의 이익을 법인 주변이나 간접적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한다는 뜻인데, 국가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국가적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등이 받는 법정기부금은 정부의 예산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국가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일단 법인의 손금으로 한 때 인정되도록 하면서, 법인의 부담능력과 손익을 무시한 과도한 지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당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한 후의 잔액소득금액이 양(+)인 경우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당연도 소득이 양이 아니고 음(-), 결손이거나, 당연도 소득이라도 이월결손금을 빼니까 음(-) 금액이 된다면 국가 등 법정기부금을 낸 경우라도 손금불산입된다. 잔액소득이 음(-)이라면 국가 등 기부금 낼 자격이 안된다는 뜻이다.

##### ② 회사지급역력×50%내에서 거의 전액 손금반영

그러나 영리기업이 처분가능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기업의 기부는 소득금액에서 강제적립금, 배당 및 채투자 재원을 제외한 만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액을 전액 공제하던 것을 2006년부터 기부금 지급능력 소득금액의 75%(2009년부터는 50%)만 인정하고 한도초과한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업은 법정기부금 등이 아무리 많아도 지급능력 소득의 50%에 훨씬 못 미치므로, 실무상으로는 법정기부금 등 지출한 금액의 거의 전액을 손금반영할 수 있게 된다.

##### ③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산식

따라서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의 개념은 지정기부금 한도계산 산식의 개념과 동일하다.

**[손금산입한도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세법상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

**[손금불산입액] : 지급부담능력 초과액**

=국가 등 기부금액-지급부담능력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

**2)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의 종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한 기부금만이 법정기부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조직과 관련 기관, 지방자치법상의 제반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은 법률요건에 따라 접수한 것만 국가 등 기부금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법인이 신문사나 방송국 등 다른 법인에게 기부하고 수증자가 이를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기부금도 법인이 직접 기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초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이는 형식을 중요시 하지 않고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실질과세의 개념에서 그 의미가 있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국방헌금이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며 일반적 국방헌금도 해당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2011. 3. 2 개정)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경리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부금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산입된다.

③ 천재지변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나 언론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어도 이에 해당한다.

즉, 구호금품의 전달방법과는 상관없이 실질개념에 의거 이재민에게 귀속되었다면 손금산입한다.

**3)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병원 등의 시설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
  2.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1. 3. 31 개정)
- ③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1. 3. 31 개정)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1. 3. 31 신설)
- ④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신설)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011. 3. 31 개정)

3. 제5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1. 3. 31 개정)

4. 제11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2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2011. 3. 31 신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1. 3. 31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1. 3. 31 개정)

⑦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1. 3. 31 신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⑧ 제3항에 따른 법인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1. 3. 31 신설)

⑨ 주무관청은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8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 3. 31 신설)

⑩ 국세청장 또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011. 3. 31 신설)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7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

는 제8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2항제2호,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1. 3. 31 신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제10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1. 3. 31 신설)

####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2010년 12월 30일 법률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공공법인에 지출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특별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등은 삭제되었으나, 법률개정전 규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라 50% 공제가 적용된다.

#### 5.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결정

##### 1) 일반적인 무상지출의 연금지출기준

###### ① 일반적인 기부금의 현금주의 손금귀속

기부금은 법인입장에서 어느 정도 여유돈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기부금이 당해 귀속자의 사용가능금액으로 귀속되어야 손금확정된다. 즉, 기부금의 손금확정연도는 현실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때로 하는데, 이는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현금이 실제 지출된 때란 뜻이다. 그러므로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하고도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실제로 현금 지출할 때까지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당연도 미지급 계상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고 실제 현금·예금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대상으로 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② 법인이 법 제24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기부금은 실제 이행시기(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 등을 지출하기 전까지는 손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② 현금지출기준의 개념

법인이 기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라면 은행을 통하여 실제 현금으로 결제되는 날을 손금의 귀속연도로 본다. 당좌수표로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 자체는 원칙적으로 당장 결제되는 것이므로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③ 기탁의 경우 실질적 지출개념

설립중에 있는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익법인 등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동 단체가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기부금으로 본다.

## 2) 자산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사용·수익기부자산

### (1)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제공

#### 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개념과 범위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법인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기간동안 법인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되 그 지하상가의 임대권을 일정기간 보유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지하상가를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 한다.

사용수익함에 따라 매년의 수익이 창출되지만 기부시점은 실제 기부한 때이다. 그러나 매년의 사용수익에 대응된다는 차원에서 대응비용인 감가상각비만큼씩 손금인정된다.

#### ②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자산의 안분계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냥 주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당해 금액을 각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이런 논리에서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감가상각비 해당액이 손금에 산입된다.

### (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

#### 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과 이연처리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부자산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로 균등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기부금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예외적으로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액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기부금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로 안분한 금액, 예외적으로는 당해 사용수익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또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때는 그 시점의 잔액을 해당 기부금, 즉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다른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합산하여 해당 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금 성격별 귀속금액 계산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경우 암묵적으로나마 사용·수익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희생원가에 비해 크다는 계산이 가능하므로 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은 사용·수익 가액이나 경제적 효익 금액을 예상하며 이에 안분 비례하여 손금산입함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사용·수익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기부자산가액에서 경제적 가치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금산입하여 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당해 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순수 기부라기보다는 대응금액이므로 기부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수익자산에 대한 기부금해당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된다.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법정기부금 해당액]**

$$= \frac{\text{당해 기부자산가액(장부가액)} - \text{사용수익이익}}{\text{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약정기간}}$$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지정기부금 해당액]

$$= \frac{\text{당해 기부자산가액(시가)} - \text{사용수익이익}}{\text{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약정기간}}$$

[사용수익자산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그 시가를 손금불산입

### III. 기부금의 회계·세무처리와 조정명세서 등

#### 1. 기부금 지출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

##### 1) 기부금의 회계처리방법

###### ① 기부금 지출시의 회계·세무처리

금전으로 지출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는 지출현금의 (차변)기부금, (대변)예금 처리로 간단하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가액이 장부상 원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회계처리에 따라서 세무조정도 달라진다.

###### 【사 례】

○ 당해 법인이 제조한 자사제품(원가 5,000,000원, 시가 10,000,00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함.

###### 【회계처리】

⇒ 제1방법

(차) 기부금	10,000,000	(대) 매출	10,000,000
매출원가	5,000,000	제품	5,000,000

(제품의 시가를 매출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므로 시부인계산만 하면 된다)

⇒ 제2방법

(차) 기부금	5,000,000	(대) 제품	5,000,000
---------	-----------	--------	-----------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비용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이미 전기에 세무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시부인 계산없이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적극적 ⊖유보)로 처분한다. 그러나 전기에 세무조정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당기에도 대응될 수 없으므로 당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전기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 ④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부금이나 지급예정액으로 보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하므로 차기 이후 지출한 연도에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적극적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향후에 실제 지출시 ⊖유보로 손금추인한다.

### (2) 저가양도·고가매입의 경우 세무조정

#### ① 저가양도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하면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해당 저가양도차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상여 등 처분한다. 반면에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시가의  $\oplus\ominus 30\%$  범위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국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손금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② 고가매입 경우의 세무조정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은 해당액이 손금부인되며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종결된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고가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이만큼은 기부금으로 하는데,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고가매입자산으로서 해당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전체 금액을 계속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며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처리하여 나감으로서 이중으로 부인되지 않도록 한다.

## 2. 기부금명세서 제출 및 조정명세서 작성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위한 명세서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 12. 30 개정)